

의안번호
제1417호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11. 13.(월)
- 나. 제출자 : 김경환 의원 외 8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1. 30.(목)

2. 제안이유

-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금액을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(3.5%)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중 “월정수당” 금액 변경 (안 제2조)
 - ▶ (현재) 월2,310,000원 ⇒ (변경) 월2,390,830원

4. 관련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- 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(의정활동비용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-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~201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, 중구의회 의원의 2018년도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3.5%를 적용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과 상위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됨.

6. 첨부자료 :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